

3.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施行令・ 施行規則(案) 立法豫告

內務部 公告 第1996-119號 1996. 5. 14

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·시행규칙(안)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주요 골자

가.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정함

- 장래에도 마을로 존속가능한 20가구이상 상주마을로
 - 상수원보호구역, 자연공원구역, 관광사적지, 주요도로변 등 위치마을
 - 불량주택이 1/3이상이고 주민 2/3이상이 지구지정을 희망하는 마을

나.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절차 마련

-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에게 승인신청서 제출
 - 30일 이내 승인여부 검토 통보
- 승인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미착수시 시행자 변경 또는 취소

다. 주거환경개선 재원조성근거를 규정

- 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국민주택기금, 농협중앙회의 출연금
- 지원규모, 금리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함

라. 농어촌 주택조합의 구성 및 조합원 자격기준

-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농·림·어업인으로 하되
- 농·림·어업인이 조합원의 2분의 10이상 이 되도록 함

마. 농어촌 빈집의 정비절차, 보상비 지급등

- 빈집정비에 따른 소유자 청문은 청문예정일 14일전까지 사유 및 일시, 장소등을

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

- 철거보상비의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며, 현금으로 지급

제 정 취 지

노후·불량한 농어촌주택의 현대화사업을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에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·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임.

주택회보